

인천지방법원 2018. 4. 11 선고 2018가단3495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파산자 만경철강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4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0. 8. 11. 접수 제9446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이진재

별지